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곽규택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1502
----------	-------

발의연월일 : 2025. 7. 16.

발 의 자 : 곽규택 · 박수영 · 이현승
백종헌 · 조경태 · 주진우
조승환 · 김도읍 · 김대식
정동만 · 이성권 · 정성국
김희정 · 서지영 · 김미애
박성훈 · 정연욱 의원
(17인)

제안이유

현행법에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나 공공기관 지방이전과 관련된 법률은 존재하나, 중앙행정기관의 지방이전을 체계적으로 뒷받침하고 이전기관의 기능 유실 방지, 지역산업과의 연계 촉진, 이전 직원의 정주여건 개선 등을 종합적으로 다루는 법률은 미비한 실정임.

특히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은 단순한 물리적 이전을 넘어 국가 해양산업의 거점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국가 전략이므로, 이를 종합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고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 정주여

건 개선, 민간 및 외국인 투자 유치, 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등 다양한 특례와 정책수단을 규정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해 국가경쟁력 강화 및 국가균형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 가. 해양수산물 및 관련 기관의 부산 이전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안 제1조부터 제3조까지)
- 나.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조성(안 제4조)
- 다. 해양산업 집적지 지정(안 제5조)
- 라. 자산학 연계 및 해양전문인력 양성(안 제6조)
- 마. 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체계 구축 지원(안 제7조)
- 바. 디지털 해양산업 기반 조성(안 제8조)
- 사. 민간기업 투자 유치를 위한 세제·입지·금융·규제 특례 규정(안 제9조)
- 아. 이전 공무원 및 직원에 대한 지원(안 제10조)
- 자. 재정지원 및 특례(안 제11조)

해양수산부 등의 부산 이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별법안

제1조(목적) 이 법은 해양수산부의 부산 이전을 안정적으로 추진하고, 해양산업 관련 기관·단체와의 집적을 촉진함으로써 부산을 중심으로 한 해양산업 기능의 고도화를 통하여 국가균형발전 및 해양산업 경쟁력 제고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이전 대상기관”이란 해양수산부 본부 및 소속기관, 산하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을 말한다.
2. “해양산업 집적지”란 해양수산부 및 관련 산업·연구기관·교육기관 등이 밀집하여 효과를 확대할 수 있도록 지정된 지역을 말한다.

제3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지방자치법」, 「국가재정법」 등 관련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한다.

- ② 이 법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해서는 관련 법률을 준용하되, 그 적용이 이 법의 목적을 현저히 저해하는 경우에는 이 법을 우선하여 적용한다.

제4조(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의 조성) ① 국가와 부산광역시는 해양수산부 및 이전 대상기관의 정주여건 개선과 해양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위하여 혁신도시 또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이하 “혁신지구”라 한다)를 조성할 수 있다.

② 혁신지구에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포함할 수 있다.

1. 이전 대상기관 및 해양산업 관련 기업의 입주 공간
2. 이전 직원 및 가족을 위한 주택단지 및 공동주거시설
3. 유치원·초중등학교·국제학교 등 교육시설
4. 문화·체육·의료·상업 등 복합 편의시설
5. 창업 및 연구개발 지원시설(스타트업 허브, R&D센터 등)

③ 국토교통부장관은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3호의 혁신도시로 지정하거나, 별도로 해양산업에 특화된 혁신지구로 지정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관련 법령의 적용을 준용할 수 있다.

④ 혁신지구 조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5조(해양산업 집적 촉진 및 지정) ① 국토교통부장관은 관계부처 장관과 협의하여 해양산업 집적 가능 지역을 해양산업 집적지로 지정할 수 있다.

② 해양산업 집적지에는 해양기술연구기관, 해양플랜트·해운 등 관련 기업, 해사 관련 기관 및 교육기관 등이 우선적으로 유치될 수 있도록 한다.

제6조(지산학 연계 및 전문인력 양성) ① 국가는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하여 지역 대학 및 연구기관과의 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② 국가는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해양플랜트, 조선, 수산업, 해양환경 등 분야별 특화 교육과정 및 인재양성 사업을 지원할 수 있다.

제7조(외국인 투자 유치 및 글로벌 협력 확대)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에 외국인 투자기업 및 해외 연구기관이 진출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외국인투자 촉진법」에 따른 외국인투자지역 지정 또는 특례 적용
2. 외국인 투자기업의 법인세·취득세 등 조세 감면 및 행정절차 간소화
3. 해외 해양산업 선도기관·대학·연구소와의 협력 네트워크 구축
4. 영어 등 외국어 기반 행정·교육·의료 서비스 인프라 확충
5. 국제 해양박람회, 글로벌 기술포럼, 해외 인재 유치 프로그램 운영

② 국가는 외국인 투자의 확대를 위하여 해양수산부, 산업통상자원부, 부산광역시,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등 관련기관 간 해양글로벌 투자협력체계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제8조(디지털 해양산업 육성) ① 국가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를 디지털 해양산업의 테스트베드 및 실증 거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다

음 각 호의 정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해양 빅데이터 센터, 스마트항만 플랫폼, 디지털 수산물 유통 시스템 구축
2. 자율운항선박, 해양로봇, 해양드론 등 지능형 장비 개발 및 실증 사업 지원
3. AI 기반 해양예측·수산자원관리 시스템 구축
4. 디지털 해양인재 양성을 위한 전문대학·대학원·훈련기관과의 협력체계 구축
5. 「산업융합 촉진법」,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법령에 따른 규제특례 적용

② 국가는 디지털 해양산업의 핵심 기술을 국가전략기술로 지정하여, 예산·세제·R&D 지원을 우선 배정할 수 있다.

제9조(민간투자 유치 및 인센티브 지원)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해양산업특화 혁신지구 내에 민간기업, 연구기관, 스타트업 등이 입주하거나 설립될 수 있도록 적극 유치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1. 조세 감면: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에 따라 소득세, 법인세, 취득세, 재산세 등의 감면 또는 유예
2. 입지 지원: 국공유지 무상 또는 저가 임대, 장기 임대부지 공급, 입지 선정 시 우선권 부여
3. 자금 지원: 정책자금, 신용보증, 기술보증, 창업투자 등의 금융지

원

4. 규제특례: 규제자유특구 지정 또는 「산업융합 촉진법」상 실증 특례 적용

5. 인력지원: 인력 채용 시 인건비 보조, 교육·연수 프로그램 연계

② 국가는 제1항의 유인책이 효과적으로 작동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 「규제자유특구 및 지역특화발전특구에 관한 규제특례법」, 「조세특례제한법」 등 관계 법령의 개정 또는 특례 적용을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③ 제1항의 세부 지원 기준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이전 직원에 대한 지원) 국가는 해양수산부 및 이전 대상기관 소속 공무원 및 직원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1. 주거 지원(주택 특별공급, 임대주택 공급,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등)

2. 자녀 교육기관 연계 및 우선 배정 협조

3.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 기간 체재비, 이사비 및 교통비 등 실비 지원

4. 학교의 설립·이전·운영, 교육재정지원, 전·입학 편의 제공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교육 관련 지원

제11조(재정지원 및 특례) ① 국가는 이 법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을 확보하고, 지방자치단체 및 이전 대상기관에 재정적 지

원을 할 수 있다.

② 「지방자치분권 및 지역균형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지역
균형발전특별회계 등 정부 재정지원사업에서 우선 고려할 수 있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법 시행 이전에 수립된 이전 관련 계획은 이 법에
따라 조정될 수 있다.